



제2934호 2024. 2. 13.(화)

www.jeonbuk.go.kr.

고 시

- 고시 제2024-27호 아중천 하천기본계획(변경) 고시 1
- 고시 제2024-29호 아중천 하천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4
- 고시 제2024-30호 원당천 하천기본계획(변경) 고시 6
- 고시 제2024-33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인가 고시 8
- 고시 제2024-34호 수지천,달길천,장수천,상월천,영은천 하천의 지정(변경) 고시 10
- 고시 제2024-35호 수지천 하천기본계획(변경) 고시 11
- 고시 제2024-36호 수지천 하천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4
- 고시 제2024-38호 달길천 하천기본계획(변경) 고시 16
- 고시 제2024-39호 달길천 하천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9
- 고시 제2024-40호 장수천 하천기본계획(변경) 고시 20
- 고시 제2024-41호 장수천 하천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3
- 고시 제2024-42호 상월천 하천기본계획(변경) 고시 24
- 고시 제2024-43호 상월천 하천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7
- 고시 제2024-44호 영은천 하천기본계획(변경) 고시 29
- 고시 제2024-45호 영은천 하천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32

공 고

- 공고 제2024-194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33
- 공고 제2024-200호 비영리민간단체 명칭, 대표자 변경 등록 공고 35
- 공고 제2024-203호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공고 36
- 공고 제2024-218호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공고 39
- 공고 제2024-219호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조합 지정 41
- 공고 제2024-220호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조합 지정 42
- 공고 제2024-232호 전북특별자치도 도립공원 공원계획변경(안) 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 43

발행 전북특별자치도 (편집 대변인실 ☎(063)280-2186)

(54968)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지시사항

- 2024.2.1.(목) 간부회의 시 도지사 지시사항 45

시 군

- 군산시 공고 제2024-296호 군산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14호선 외3개소)사업 공사완료 공고 49
- 김제시 고시 제2024-19호 김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자평선 복합어울림 창업지원센터)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50
- 완주군 고시 제2024-16호 완주 군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화산배수지)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52
- 고창군 고시 제2024-24호 고창 군계획시설(청솔제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53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27호

아중천 하천기본계획(변경) 고시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전주시에서 수립한 「아중천 하천기본계획(변경)」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4년 2월 13일

1. 수립목적

아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당초 하천기본계획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자원 종합지침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2. 금회수립 대상범위

수계명	하천명	하천 등급	하 천 의 구 간		연장 (km)	비고
			기 점	종 점		
만경강	아중천	지방	전북 전주시 우아동1가 7번지선	전북 전주시 아중리 소양천 합류점	8.00	전북260호 (1982.10.11.)
			전북 전주시 우아동1가 82번지선	전북 전주시 우아동 소양천(국가)합류점	7.93	전라북도 고시 제2018-37호 (2018.03.08.)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1가 82번지선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1가 808-1번지선 (인교저수지 유입부)	3.14	일부구간 재수립

3. 연평균 강우량과 하천 수자원의 부족량에 관한 사항

하천명	유역 면적 (km ²)	수자원 총량 (백만m ³)	기 준 갈수량 (m ³ /s)	저수량 (m ³ /s)	유출량(백만m ³)			손실량 (백만m ³)
					홍수기	평상시	계	
아중천	14.38	17.85	0.002	0.020	7.28	1.39	8.67	9.18

4. 정비계획

하천명	하천연장 (km)	하천기본계획(km)		하천정비(km)				비 고
		수립	미수립	합계	완료 구간	필요 구간	기타안전도 확보구간	
아중천	7.93	7.93	-	15.86	15.43	0.22	0.21	

주) 하천정비 연장은 금회 하천기본계획 수립 양안 연장임

5. 하천유역의 지역별 및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

하천명	주요지점명	유역 면적 (km ²)	계획 규모 (년)	기 본 홍수량 (m ³ /s)	계획홍수량 (m ³ /s)		유역 및 홍수방어 시설별 홍수량 (m ³ /s)
					하도분담	유역분담	
아중천	아중천 종점 (No.0+000)	14.38	100	189	190	-	-
	우아교 (No.1+527)	12.59	100	189	190	-	-
	복개 종점 (No.2+877)	11.23	100	189	190	-	-
	인교저수지 하구 (No.3+816)	10.07	100	181	185	-	-
	인교저수지 유입부 (No.4+797)	8.95	100	165	165	-	-
	무명천 합류전 (No.5+398)	7.45	100	157	160	-	-
	아중4교 (No.6+110)	6.50	100	148	150	-	-
	무명천 합류전 (No.6+997)	4.63	100	112	115	-	-

6. 하천의 주요지점별 기본홍수량·계획홍수량·계획홍수위 및 계획하폭에 관한 사항

하천명	측점 (No.)	누가 거리 (m)	계 획 홍수량 (m ³ /s)	계 획 홍수위 (EL.m)	계 획 규모 (년)	하 폭 (m)		시설제방고 (EL.m)		비 고
						현재	계획	좌안	우안	
아중천	0+000	0	190	33.15	100	246	246	35.56	36.34	아중천 종점
	1+527	1,527	190	45.18	100	43	43	47.52	47.67	우아교
	2+877	2,877	190	56.16	100	25	25	58.33	58.33	복개종점
	3+816	3,816	185	69.02	100	18	18	71.33	72.72	인교저수지 하구
	4+797	4,797	165	76.63	100	28	30	75.40	79.93	인교저수지 유입부
	5+398	5,398	160	82.81	100	26	30	83.55	83.62	무명천 합류전
	6+110	6,110	150	92.91	100	14	25	94.14	94.14	아중4교
	6+997	6,997	115	106.28	100	12	25	107.08	106.54	무명천 합류전

7. 하천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복원지구 또는 친수지구에 관한 사항

하천명	구간(No.)	좌·우안 구분	지구구분	연장(m)	면적(m ²)
아중천	0+000~0+470	좌안	근린친수지구	470	21,529
	0+470~0+551	좌안	복원지구	81	2,138
	0+551~1+544	좌안	근린친수지구	993	28,040
	1+544~1+761	좌안	복원지구	217	5,745
	1+761~2+878	좌안	근린친수지구	1,117	23,819
	3+437~4+932	좌안	친수거점지구	1,495	181,283
	4+932~5+128	좌안	복원지구	196	7,678
	5+128~5+244	좌안	일반보전지구	116	2,574
	5+244~7+389	좌안	복원지구	2,145	59,445
	7+389~7+473	좌안	일반보전지구	84	970
	7+473~7+932	좌안	복원지구	459	14,082
	0+000~0+468	우안	근린친수지구	468	15,224
	0+468~0+552	우안	복원지구	84	2,171
	0+552~1+551	우안	근린친수지구	999	30,794
	1+551~1+763	우안	복원지구	212	5,482
	1+763~2+878	우안	근린친수지구	1,115	23,768
	3+437~4+791	우안	친수거점지구	1,354	94,023
	4+791~5+224	우안	완충보전지구	433	8,670
	5+224~5+998	우안	일반보전지구	774	18,823
	5+998~6+121	우안	복원지구	123	1,624
	6+121~6+300	우안	일반보전지구	179	1,541
6+300~7+932	우안	복원지구	1,632	24,753	

8.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하천기본계획에 대한 도서 및 관계 서류는 전북특별자치도 물통합관리과, 전주시청 하천관리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29호

아중천 하천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하천법」 제10조에 의하여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전북특별자치도청(물통합관리과), 전주시청(하천관리과)에 비치된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4년 2월 13일

- 1. 하천의 명칭 및 종류 : 아중천 지방하천
- 2. 하천구역 지정(변경)일 : 2024. 2. 13.
- 3. 지정(변경) 사유 :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에 따른 하천구역 변경
- 4. 하천 구간

하천명	하 천 구 간			면적 (㎡)	결정 사유
	기 점	종 점	거리 (km)		
아중천	22개 지구 (좌안 - 12개 지구, 우안 - 10개 지구)		15.864	589,262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180-1번지선 (No.0+666)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21-3번지선 (No.0+000)	0.666	19,353	기본계획 재수립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374-7번지선 (No.1+500)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180-1번지선 (No.0+666)	0.834	12,121	기본계획 재수립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700-56번지선 (No.1+883)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374-7번지선 (No.1+500)	0.383	13,653	기본계획 재수립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2가 808-6번지선 (No.2+024)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700-61번지선 (No.1+883)	0.141	1,137	기본계획 재수립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2가 590-2번지선 (No.2+346)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2가 808-6번지선 (No.2+024)	0.322	13,710	기본계획 재수립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2가 378-2번지선 (No.2+877)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2가 590-2번지선 (No.2+346)	0.531	10,702	기본계획 재수립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1가 1057-12번지선 (No.3+436)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2가 968번지선 (No.2+877)	0.559	13,473	기본계획 재수립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1가 산337-2번지선 (No.3+786)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1가 1057-12번지선 (No.3+436)	0.350	11,431	기본계획 재수립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1가 747번지선 (No.4+786)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1가 산337-2번지선 (No.3+786)	1.000	140,138	기본계획 재수립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1가 682-9번지선 (No.5+150)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1가 747-1번지선 (No.4+786)	0.364	10,223	기본계획 재수립

하천명	하 천 구 간			면적 (㎡)	결정 사유	
	기 점	종 점	거리 (km)			
아중천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1가 산240-1번지선 (No.7+386)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1가 682-9번지선 (No.5+150)	2.236	40,725	기본계획 재수립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1가 80번지선 (No.7+932)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1가 산240번지선 (No.7+386)	0.546	7,328	기본계획 재수립	
	좌안부 소계			7.932	293,994	12개 지구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700-1번지선 (No.0+634)	전북 전주시 용진읍 구역리 923-87번지선 (No.0+000)	0.634	28,299	기본계획 재수립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339-10번지선 (No.1+528)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700-1번지선 (No.0+634)	0.894	34,934	기본계획 재수립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2가 591-6번지선 (No.2+380)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339-10번지선 (No.1+528)	0.852	13,995	기본계획 재수립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2가 379-2번지선 (No.2+878)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2가 591-6번지선 (No.2+380)	0.498	6,991	기본계획 재수립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1가 941-29번지선 (No.3+434)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2가 968번지선 (No.2+878)	0.556	5,050	기본계획 재수립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1가 산31-2번지선 (No.3+828)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1가 941-29번지선 (No.3+434)	0.394	2,291	기본계획 재수립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1가 812번지선 (No.4+798)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1가 산31-2번지선 (No.3+828)	0.970	114,027	기본계획 재수립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1가 산72-5번지선 (No.6+181)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1가 812번지선 (No.4+798)	1.383	41,022	기본계획 재수립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1가 산73번지선 (No.6+298)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1가 산72-5번지선 (No.6+181)	0.117	4,842	기본계획 재수립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1가 66번지선 (No.7+932)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1가 산73번지선 (No.6+298)	1.634	43,817	기본계획 재수립	
	우안부 소계			7.932	295,268	10개 지구

- 첨부 열람서류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기재한 서류
2. 하천구역의 지형도면(축적 5,0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30호

원당천 하천기본계획(변경) 고시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전주시에서 수립한 「원당천 하천기본계획(변경)」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4년 2월 13일

1. 수립목적

원당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당초 하천기본계획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자원 종합지침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2. 금회수립 대상범위

수계명	하천명	하천 등급	하 천 의 구 간		연장 (km)	비고
			기 점	종 점		
만경강	원당천	지방	전북 전주시 대성동 520번지선	전북 전주시 대성동 전주천(지방1급) 합류점	1.50	전라북도 고시 제2007-65호 (2007.04.06.)
			전북 전주시 완산구 대성동 산88번지선	전북도 전주시 완산구 대성동 1030-1번지선 전주천(지방) 합류점	1.60	전라북도 고시 제2019-283호 (2019.11.29.)
			전북 전주시 완산구 대성동 산88번지선	전북 전주시 완산구 대성동 1030-1번지선 전주천(지방) 합류점	1.60	재수립

3. 연평균 강우량과 하천 수자원의 부족량에 관한 사항

하천명	유역 면적 (km ²)	수자원 총량 (백만 m ³)	기 준 갈수량 (m ³ /s)	저수량 (m ³ /s)	유출량(백만 m ³)			손실량 (백만 m ³)
					홍수기	평상시	계	
원당천	2.02	2.643	0.0059	0.0236	1.082	0.440	1.522	1.121

4. 정비계획

하천명	하천연장 (km)	하천기본계획(km)		하천정비(km)				비 고
		수립	미수립	합계	완료 구간	필요 구간	기타안전도 확보구간	
원당천	1.60	1.60	-	3.20	-	2.30	0.90	

주) 하천정비 연장은 금회 하천기본계획 수립 양안 연장임

5. 하천유역의 지역별 및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

하천명	주요지점명	유역 면적 (km ²)	계획 규모 (년)	기 본 홍수량 (m ³ /s)	계획홍수량 (m ³ /s)		유역 및 홍수방어 시설별 홍수량 (m ³ /s)
					하도분담	유역분담	
원당천	원당천 종점 (No.0+000)	2.02	80	46	46	-	-
	참조은아파트 지점 (No.0+550)	1.55	80	36	36	-	-
	원당10낙차공 지점 (No.1+221)	0.71	80	17	17	-	-
	원당천 시점 (No.1+600)	0.55	80	13	13	-	-

6. 하천의 주요지점별 기본홍수량·계획홍수량·계획홍수위 및 계획하폭에 관한 사항

하천명	측점 (No.)	누가 거리 (m)	계 획 홍수량 (m ³ /s)	계 획 홍수위 (EL.m)	계 획 규모 (년)	하폭 (m)		시설제방고 (EL.m)		비 고
						현재	계획	좌안	우안	
원당천	0	0	46	52.31	80	10	29	53.64	52.35	원당천 종점
	0+550	550	36	63.37	80	12	16	64.96	65.15	참조은아파트 지점
	1+221	1,221	17	94.78	80	23	23	산	산	원당10낙차공 지점
	1+600	1,600	13	121.49	80	18	18	산	산	원당천 시점

7. 하천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복원지구 또는 친수지구에 관한 사항

하천명	구간(No.)	좌·우안 구분	지구구분	연장(m)	면적(m ²)
원당천	0+000 ~ 1+600	좌 안	복원지구	1,600	12,126
	0+000 ~ 1+600	우 안	복원지구	1,600	14,753

8.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하천기본계획에 대한 도서 및 관계 서류는 전북특별자치도 물통합관리과, 전주시청 하천관리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 2024 - 33호

「하수도법」 제11조에 의거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인가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13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인가 고시

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가. 명 칭 : 김제시장
 - 나. 주 소 : 김제시 중앙로 40
2. 사업목적 : 생활오수 적정처리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가. 위 치 : 김제시 성덕면 대목리 1015-49, 1060-4, 1060-7, 1229-14, 1411
 - 나. 면 적 : 475m²(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면적)
4. 설치하려는 시설의 종류·명칭 및 용량
 - 가. 명 칭 : 김제 대석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 나. 용 량 : 50m³/일

<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인가 조건 >

-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준수할 것
5. 예정배수구역 및 예정하수처리구역
 - 가. 예정배수구역 : 0.14km²
 - 나. 예정하수처리구역 : 0.14km²
6. 사업시행기간 : 2023 ~ 2025년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조서, 그 지번 및 지목 등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 붙임참조
8. 기 타 : 관계 서류는 김제 상하수도과(063-540-3869)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조서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공유지분)	
계				629			
김제시 성덕면 대목리	1015-49	답	52	52	김제시 중앙로 40	김제시	토지 매입 완료 (2023. 12. 15.) (진출입로)
김제시 성덕면 대목리	1060-4	답	568	307	김제시 중앙로 40	김제시	토지 매입완료 (2022. 04. 07.) (하수처리장)
김제시 성덕면 대목리	1060-7	전	321	168	김제시 중앙로 40	김제시	토지 매입완료 (2022. 04. 04.) (하수처리장)
김제시 성덕면 대목리	1229-14	도	235	17		국토교통부	사용 허가 진행중 (건설과) (진출입로)
김제시 성덕면 대목리	1411	구	20,998	85		농림축산 식품부	사용 허가 진행중 (농어촌공사) (진출입로)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34호

수지천, 달길천, 장수천, 상월천, 영은천 하천의 지정(변경) 고시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전라북도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하천법」 제7조 제3항에 의거 수지천, 달길천, 장수천, 상월천, 영은천의 하천구간을 지정(변경)하고 「하천법」 제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4년 2월 13일

1. 하천의 지정(변경) 내역

구분	하천명	하천 등급	하천의 구간								하천 연장 (km)	결정 (변경)일
			기 점				중 점					
			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계	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계		
당초	수지천	지방	전북	남원	송동	송상리	전북	남원	수지	남창리 (십진강 합류점)	11.00	1982.10.11. (전북260호)
변경			전북	남원	수지	호곡리 산31-8번지선	전북	남원	송동	세전리 105번지선 섬진강(국가)합류점	7.40	2024.02.13.
당초	달길천	지방	전북	진안	성수	증길리 562번지선	전북	진안	성수	좌포리 섬진강(지방)합류점	6.75	1982.10.11. (전북260호)
변경			전북	진안	성수	증길리 577-6번지선	전북	진안	성수	좌포리 1273-44번지선 섬진강(지방)합류점	6.72	2024.02.13.
당초	장수천	지방	전북	장수	장수	노곡리 소하천 합류점	전북	장수	장수	노곡리 금강(지방)합류점	4.00	1982.10.11. (전북260호)
변경			전북	장수	장수	노곡리 1424-74번지선	전북	장수	장수	장수리 717-2번지선 금강(지방)합류점	3.92	2024.02.13.
당초	상월천	지방	전북	임실	관촌	상월리 430번지선	전북	임실	관촌	방현리 섬진강(지방) 합류점	9.00	1982.10.11. (전북260호)
변경			전북	임실	관촌	신전리 149-2번지선	전북	임실	관촌	방현리 28번지선 섬진강(지방) 합류점	5.63	2024.02.13.
당초	영은천	지방	전북	부안	하서	석상리 815-3번지선	전북	부안	하서	언독리 주상천(지방)합류점	5.92	1982.10.11. (전북260호)
변경			전북	부안	상서	통정리 686번지선	전북	부안	하서	언독리 1079-1번지선 주상천(지방)합류점	5.92	2024.02.13.

2. 지정(변경) 사유

- 하천의 이용과 보전을 위한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에 따른 하천의 지정 변경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35호

수지천 하천기본계획(변경) 고시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수립한 「수지천 하천기본계획(변경)」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4년 2월 13일

1. 수립목적

그 간의 하천개수사업, 도시화, 기상 변화,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변화되는 하도 및 수리·수문 특성을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자원 종합지침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2. 금회수립 대상범위

수계명	하천명	하천 등급	하 천 의 구 간		연장 (km)	비고
			기 점	종 점		
섬진강	수지천	지방	전북 남원시 송동면 송상리	전북 남원시 수지면 남창리 섬진강	11.00	전북260호 (1982.10.11.)
			전북 남원시 수지면 호곡리(소하천 합류점)	전북 남원시 수지면 남창리(섬진강 합류점)	11.00	전라북도 고시 제2001-361호 (2001.12.14.)
			전북 남원시 수지면 호곡리 산31-8번지선	전북 남원시송동면 세진리 105번지선 섬진강(국가)합류점	7.40	재수립

3. 연평균 강우량과 하천 수자원의 부존량에 관한 사항

하천명	유역 면적 (km ²)	수자원 총량 (백만m ³)	기 준 갈수량 (m ³ /s)	저수량 (m ³ /s)	유출량(백만m ³)			손실량 (백만m ³)
					홍수기	평상시	계	
수지천	35.92	48.29	0.095	0.200	20.93	8.79	29.72	18.57

4. 정비계획

하천명	하천연장 (km)	하천기본계획(km)		하천정비(km)				비 고
		수립	미수립	합계	완료 구간	필요 구간	기타안전도 확보구간	
수지천	7.40	7.40	-	14.80	13.25	-	1.55	

주) 하천정비 연장은 금회 하천기본계획 수립 양안 연장임

5. 하천유역의 지역별 및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

하천명	주요지점명	유역 면적 (km ²)	계획 규모 (년)	기 본 홍수량 (m ³ /s)	계획홍수량 (m ³ /s)		유역 및 홍수방어 시설별 홍수량 (m ³ /s)
					하도분담	유역분담	
수지천	수지천 종점 (No. 0+000)	35.92	80	365	365	-	-
	남창천 합류전 (No.1+100)	31.11	80	329	329	-	-
	등동천 합류전 (No.3+493)	25.86	80	320	320	-	-
	유암천 합류전 (No.4+500)	19.17	80	259	259	-	-
	외호곡천 합류전 (No.5+850)	15.94	80	232	232	-	-
	내호곡천 합류전 (No.6+650)	14.46	80	225	225	-	-
	고평천 합류전 (No.7+050)	6.00	80	101	101	-	-
	수지천시점 (No.7+400)	5.85	80	101	101	-	-

6. 하천의 주요지점별 기본홍수량·계획홍수량·계획홍수위 및 계획하폭에 관한 사항

하천명	측점 (No.)	누가 거리 (m)	계 획 홍수량 (m ³ /s)	계 획 홍수위 (EL.m)	계 획 규모 (년)	하 폭 (m)		기 설 제 방 고 (EL.m)		비 고
						현재	계 획	좌 안	우 안	
수지천	0+000	0	365	54.48	80	135	135	56.17	56.65	수지천 종점
	1+100	1,100	329	55.72	80	54	54	57.92	57.73	남창천 합류전
	3+493	3,493	320	67.76	80	58	58	69.58	70.63	등동천 합류전
	4+500	4,500	259	75.35	80	52	52	76.17	76.43	유암천 합류전
	5+850	5,850	232	88.17	80	38	38	89.69	89.64	외호곡천 합류전
	6+650	6,650	225	98.68	80	35	35	99.91	100.1	내호곡천 합류전
	7+050	7,050	101	105.74	80	31	31	107.07	107.07	고평천 합류전
	7+400	7,400	101	119.34	80	9	9	125.33	125.33	수지천 시점

7. 하천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복원지구 또는 친수지구에 관한 사항

하천명	구간(No.)	좌·우안 구분	지구구분	연장(m)	면적(m ²)
수지천	0+000~7+400	좌안	복원지구	7,400	271,031
	0+000~7+400	우안	복원지구	7,400	279,590

8.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하천기본계획에 대한 도서 및 관계 서류는 진라북도청 물통합관리과, 남원시청 안전재난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36호

수지천 하천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하천법」 제10조에 의하여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전북특별자치도청(물통합관리과), 남원시청(안전재난과)에 비치된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4년 2월 13일

1. 하천의 명칭 및 종류 : 수지천 지방하천
2. 하천구역 지정(변경)일 : 2024. 2. 13.
3. 지정(변경) 사유 :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에 따른 하천구역 변경
4. 하천 구간

하천명	하 천 구 간			면적 (㎡)	결정 사유
	기 점	종 점	거리 (km)		
수지천	10개 지구 (좌안 - 5개 지구, 우안 - 5개 지구)		14.800	550,621	
	전북 남원시 수지면 남창리 1619-12번지선 (No.1+050)	전북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1336-559번지선 (No.0+000)	1.050	106,300	기본계획 재수립
	전북 남원시 수지면 초리 663-144번지선 (No.2+400)	전북 남원시 수지면 남창리 1619-12번지선 (No.1+050)	1.350	113,659	기본계획 재수립
	전북 남원시 수지면 초리 910-10번지선 (No.3+700)	전북 남원시 수지면 초리 663-144번지선 (No.2+400)	1.300	28,918	기본계획 재수립
	전북 남원시 수지면 호곡리 976-322번지선 (No.5+750)	전북 남원시 수지면 초리 910-10번지선 (No.3+700)	2.050	85,035	기본계획 재수립
	전북 남원시 수지면 호곡리 산33-6번지선 (No.7+400)	전북 남원시 수지면 호곡리 976-322번지선 (No.5+750)	1.650	50,559	기본계획 재수립
	좌안부 소계		7.400	384,471	5개 지구
	전북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48-1번지선 (No.1+050)	전북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1453-2번지선 (No.0+000)	1.050	55,741	기본계획 재수립
	전북 남원시 수지면 남창리 1947-8번지선 (No.2+400)	전북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48-1번지선 (No.1+050)	1.350	34,895	기본계획 재수립
	전북 남원시 수지면 초리 37-2번지선 (No.3+700)	전북 남원시 수지면 남창리 1947-8번지선 (No.2+400)	1.300	15,124	기본계획 재수립

하천명	하 천 구 간			면적 (㎡)	결정 사유
	기 점	종 점	거리 (km)		
수지천	전북 남원시 수지면 호곡리 1179-1번지선 (No.5+750)	전북 남원시 수지면 초리 37-2번지선 (No.3+700)	2.050	38,789	기본계획 재수립
	전북 남원시 수지면 호곡리 산31-8번지선 (No.7+400)	전북 남원시 수지면 호곡리 1179-1번지선 (No.5+750)	1.650	21,601	기본계획 재수립
	우안부 소계			7.400	166,150

- 첨부 열람서류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기재한 서류
2. 하천구역의 지형도면(축적 5,0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38호

달길천 하천기본계획(변경) 고시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수립한 「달길천 하천기본계획(변경)」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4년 2월 13일

1. 수립목적

그 간의 하천개수사업, 도시화, 기상 변화,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변화되는 하도 및 수리·수문 특성을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자원 종합지침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2. 금회수립 대상범위

수계명	하천명	하천 등급	하 천 의 구 간		연장 (km)	비고
			기 점	종 점		
섬진강	달길천	지방	전북 진안군 성수면 중길리 562번지선	전북 진안군 성수면 좌포리 섬진강(지방) 합류점	6.75	전북260호 (1982.10.11.)
			전북 진안군 성수면 중길리 562번지선	전북 진안군 성수면 좌포리 섬진강(지방) 합류점	6.75	전라북도 고시 제2001-278호 (2001.10.05.)
			전북 진안군 성수면 중길리 577-6번지선	전북 진안군 성수면 좌포리 1273-44번지선 섬진강(지방)합류점	6.72	재수립

3. 연평균 강우량과 하천 수자원의 부존량에 관한 사항

하천명	유역 면적 (km ²)	수자원 총량 (백만m ³)	기 준 갈수량 (m ³ /s)	저수량 (m ³ /s)	유출량(백만m ³)			손실량 (백만m ³)
					홍수기	평상시	계	
달길천	16.58	22.22	0.0171	0.0723	9.96	3.75	13.71	8.51

4. 정비계획

하천명	하천연장 (km)	하천기본계획(km)		하천정비(km)				비 고
		수립	미수립	합계	완료 구간	필요 구간	기타안전도 확보구간	
달길천	6.72	6.72	-	13.44	9.91	2.29	1.24	

주) 하천정비 연장은 금회 하천기본계획 수립 양안 연장임

5. 하천유역의 지역별 및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

하천명	주요지점명	유역 면적 (km ²)	계획 규모 (년)	기 본 홍수량 (m ³ /s)	계획홍수량 (m ³ /s)		유역 및 홍수방어 시설별 홍수량 (m ³ /s)
					하도분담	유역분담	
달길천	달길천 종점 (No.0+000)	16.58	50	199	199	-	-
	내리막골천(소) 합류전 (No.2+200)	13.11	50	174	174	-	-
	오암1천(소) 합류전 (No.2+700)	10.97	50	155	155	-	-
	마치천(소) 합류전 (No.3+050)	5.70	50	81	81	-	-
	달길제1교 지점 (No.4+776)	4.55	50	81	81	-	-
	중달길 마을종점 (No.5+500)	3.70	50	77	77	-	-
	중달길천(소) 합류전 (No.6+023)	2.05	50	49	49	-	-
	달길천 시점 (No.6+721)	0.92	50	49	49	-	-

6. 하천의 주요지점별 기본홍수량·계획홍수량·계획홍수위 및 계획하폭에 관한 사항

하천명	측점 (No.)	누가 거리 (m)	계 획 홍수량 (m ³ /s)	계 획 홍수위 (EL.m)	계획 규모 (년)	하폭 (m)		시설제방고 (EL.m)		비 고
						현재	계획	좌안	우안	
달길천	0+000	0	199	241.62	50	80	87	241.76	242.12	달길천 종점
	2+200	2,200	174	257.53	50	44	44	259.05	258.95	내리막골천(소) 합류전
	2+700	2,700	155	261.98	50	32	32	264.31	263.84	오암1천(소)합류전
	3+050	3,050	81	267.60	50	41	41	268.36	268.64	마치천(소)합류전
	4+776	4,776	81	294.14	50	24	24	296.30	296.30	달길제1교
	5+500	5,500	77	306.42	50	23	23	산	307.88	중달길 마을 종점
	6+023	6,023	49	315.85	50	10	13	317.22	317.10	중달길천(소) 합류전
	6+721	6,721	49	334.46	50	5	5	336.00	336.00	달길천 시점

7. 하천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복원지구 또는 친수지구에 관한 사항

하천명	구간(No.)	좌·우안 구분	지구구분	연장(m)	면적(m ²)
달길천	0+000~1+150	좌안	일반보전지구	1,150	30,714
	1+150~6+721	좌안	복원지구	5,571	105,769
	0+000~1+150	우안	일반보전지구	1,150	33,162
	1+150~6+721	우안	복원지구	5,571	113,722

8.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하천기본계획에 대한 도서 및 관계 서류는 전북특별자치도 물통합관리과, 진안군청 안전재난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39호

달길천 하천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하천법」 제10조에 의하여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전북특별자치도청(물통합관리과), 진안군청(안전재난과)에 비치된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4년 2월 13일

1. 하천의 명칭 및 종류 : 달길천 지방하천
2. 하천구역 지정(변경)일 : 2024. 2. 13.
3. 지정(변경) 사유 :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에 따른 하천구역 변경
4. 하천 구간

하천명	하 천 구 간			면적 (㎡)	결정 사유	
	기 점	종 점	거리 (km)			
달길천	6개 지구 (좌안 - 3개 지구, 우안 - 3개 지구)			13.442	283,367	
	전북 진안군 성수면 좌포리 1040번지선 (No.2+250)	전북 진안군 성수면 좌포리 1273-44번지선 (No.0+000)	2.250	62,003	기본계획 재수립	
	전북 진안군 성수면 중길리 238-5번지선 (No.4+500)	전북 진안군 성수면 좌포리 1040번지선 (No.2+250)	2.250	46,062	기본계획 재수립	
	전북 진안군 성수면 중길리 577-6번지선 (No.6+721)	전북 진안군 성수면 중길리 238-5번지선 (No.4+500)	2.221	28,316	기본계획 재수립	
	좌안부 소계			6.721	136,381	3개 지구
	전북 진안군 성수면 좌포리 1037-2번지선 (No.2+250)	전북 진안군 성수면 좌포리 1402-3번지선 (No.0+000)	2.250	67,057	기본계획 재수립	
	전북 진안군 성수면 중길리 793번지선 (No.4+500)	전북 진안군 성수면 좌포리 1037-2번지선 (No.2+250)	2.250	46,655	기본계획 재수립	
	전북 진안군 성수면 중길리 585-2번지선 (No.6+721)	전북 진안군 성수면 중길리 793번지선 (No.4+500)	2.221	33,274	기본계획 재수립	
	우안부 소계			6.721	146,986	3개 지구

- 첨부 열람서류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기재한 서류
2. 하천구역의 지형도면(축적 5,0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40호

장수천 하천기본계획(변경) 고시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수립한 「장수천 하천기본계획(변경)」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4년 2월 13일

1. 수립목적

그 간의 하천개수사업, 도시화, 기상 변화,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변화되는 하도 및 수리·수문 특성을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자원 종합지침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2. 금회수립 대상범위

수계명	하천명	하천 등급	하 천 의 구 간		연장 (km)	비고
			기 점	종 점		
금강	장수천	지방	전북 장수군 장수읍 노곡리 소하천 합류점	전북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금강(지방) 합류점	4.00	전북260호 (1982.10.11.)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노곡리 1424-74번지선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717-2번지선 금강(지방)합류점	3.92	재수립

3. 연평균 강우량과 하천 수자원의 부족량에 관한 사항

하천명	유역 면적 (km ²)	수자원 총량 (백만 m ³)	기 준 갈수량 (m ³ /s)	저수량 (m ³ /s)	유출량(백만 m ³)			손실량 (백만 m ³)
					홍수기	평상시	계	
장수천	16.02	23.63	0.035	0.061	10.56	4.81	15.37	8.26

4. 정비계획

하천명	하천연장 (km)	하천기본계획(km)		하천정비(km)				비 고
		수립	미수립	합계	완료 구간	필요 구간	기타안전도 확보구간	
장수천	3.92	3.92	-	7.84	5.18	1.72	0.95	

주) 하천정비 연장은 금회 하천기본계획 수립 양안 연장임

5. 하천유역의 지역별 및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

하천명	주요지점명	유역 면적 (km ²)	계획 규모 (년)	기 본 홍수량 (m ³ /s)	계획홍수량 (m ³ /s)		유역 및 홍수방어 시설별 홍수량 (m ³ /s)
					하도분담	유역분담	
장수천	장수천 종점 (No.0+000)	16.02	80	181	181	-	-
	두산천(소) 합류전 (No.0+245)	12.95	80	149	149	-	-
	동촌천(소) 합류전 (No.1+431)	8.81	50	108	108	-	-
	상중천(소) 합류전 (No.2+174)	6.40	50	84	84	-	-
	하리천(소) 합류전 (No.2+699)	4.85	50	66	66	-	-
	장수천 시점 (No.3+918)	2.22	50	35	35	-	-

6. 하천의 주요지점별 기본홍수량·계획홍수량·계획홍수위 및 계획하폭에 관한 사항

하천명	측점 (No.)	누가 거리 (m)	계 획 홍수량 (m ³ /s)	계 획 홍수위 (EL.m)	계 획 규모 (년)	하폭 (m)		시설제방고 (EL.m)		비 고
						현재	계획	좌안	우안	
장수천	0+000	0	181	411.99	80	21	21	408.77	411.98	장수천 종점
	0+245	245	181	412.73	80	48	48	414.93	414.98	두산천(소) 합류전
	1+431	1,431	149	425.38	50	29	29	426.01	426.00	동촌천(소) 합류전
	2+174	2,174	108	435.01	50	20	20	436.15	436.36	상중천(소) 합류전
	2+699	2,699	84	443.62	50	20	20	444.97	444.19	하리천(소) 합류전
	3+918	3,918	66	473.01	50	25	25	474.25	473.41	장수천 시점

7. 하천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복원지구 또는 친수지구에 관한 사항

하천명	구간(No.)	좌·우안 구분	지구구분	연장(m)	면적(m ²)
장수천	0+000~1+450	좌안	근린친수지구	1,450	11,840
	1+450~3+918	좌안	복원지구	2,468	34,091
	0+000~1+450	우안	근린친수지구	1,450	43,806
	1+450~3+918	우안	복원지구	2,468	35,071

8.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하천기본계획에 대한 도서 및 관계 서류는 진라북도청 물통합관리과, 장수군청 안전재난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41호

장수천 하천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하천법」 제10조에 의하여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전북특별자치도청(물통합관리과), 장수군청(안전재난과)에 비치된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4년 2월 13일

1. 하천의 명칭 및 종류 : 장수천 지방하천
2. 하천구역 지정(변경)일 : 2024. 2. 13.
3. 지정(변경) 사유 :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에 따른 하천구역 변경
4. 하천 구간

하천명	하 천 구 간			면적 (㎡)	결정 사유
	기 점	종 점	거리 (km)		
장수천	7개 지구 (좌안 - 4개 지구, 우안 - 3개 지구)		7.836	124,808	
	전북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106-번지선 (No.1+062)	전북 장수군 장수읍 송천리 24-5번지선 (No.0+000)	1.062	8,881	기본계획 재수립
	전북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58-9번지선 (No.1+453)	전북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106-번지선 (No.1+062)	0.391	2,959	기본계획 재수립
	전북 장수군 장수읍 노곡리 1825-1번지선 (No.2+702)	전북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58-9번지선 (No.1+453)	1.249	20,441	기본계획 재수립
	전북 장수군 장수읍 노곡리 235번지선 (No.3+918)	전북 장수군 장수읍 노곡리 1825-1번지선 (No.2+702)	1.216	13,650	기본계획 재수립
	좌안부 소계		3.918	45,931	4개 지구
	전북 장수군 장수읍 노곡리 1491-2번지선 (No.2+270)	전북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718-2번지선 (No.0+000)	2.270	66,130	기본계획 재수립
	전북 장수군 장수읍 노곡리 3+453번지선 (No.3+453)	전북 장수군 장수읍 노곡리 1491-2번지선 (No.2+270)	1.183	7,612	기본계획 재수립
	전북 장수군 장수읍 노곡리 233번지선 (No.3+918)	전북 장수군 장수읍 노곡리 3+453번지선 (No.3+453)	0.465	5,135	기본계획 재수립
	우안부 소계		3.918	78,877	3개 지구

첨부 열람서류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기재한 서류

2. 하천구역의 지형도면(축적 5,0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42호

상월천 하천기본계획(변경) 고시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수립한 「상월천 하천기본계획(변경)」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4년 2월 13일

1. 수립목적

그 간의 하천개수사업, 도시화, 기상 변화,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변화되는 하도 및 수리·수문 특성을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자원 종합지침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2. 금회수립 대상범위

수계명	하천명	하천 등급	하 천 의 구 간		연장 (km)	비고
			기 점	종 점		
섬진강	상월천	지방	전북 임실군 관촌면 상월리 376번지선	전북 임실군 관촌면 방현리 섬진강(지방)합류점	9.00	전북260호 (1982.10.11.)
			전북 임실군 관촌면 신전리 149-2번지선	전북 임실군 관촌면 방현리 섬진강(지방)합류점	5.64	전라북도 고시 제2001-272호 (2001.10.05.)
			전북 임실군 관촌면 신전리 149-2번지선	전북 임실군 관촌면 방현리 28번지선 섬진강(지방)합류점	5.63	재수립

3. 연평균 강우량과 하천 수자원의 부존량에 관한 사항

하천명	유역 면적 (km ²)	수자원 총량 (백만m ³)	기 준 갈수량 (m ³ /s)	저수량 (m ³ /s)	유출량(백만m ³)			손실량 (백만m ³)
					홍수기	평상시	계	
상월천	14.11	18.47	0.005	0.007	6.88	1.12	8.00	10.47

4. 정비계획

하천명	하천연장 (km)	하천기본계획(km)		하천정비(km)				비고
		수립	미수립	합계	완료 구간	필요 구간	기타안전도 확보구간	
상월천	5.63	5.63	-	11.26	7.35	2.19	1.72	

주) 하천정비 연장은 금회 하천기본계획 수립 양안 연장임

5. 하천유역의 지역별 및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

하천명	주요지점명	유역 면적 (km ²)	계획 규모 (년)	기 본 홍수량 (m ³ /s)	계획홍수량 (m ³ /s)		유역 및 홍수방어 시설별 홍수량 (m ³ /s)
					하도분담	유역분담	
상월천	상월천 종점 (No.0+000)	14.11	50	167	170	-	-
	방현2교 지점 (No.1+589)	13.33	50	170	170	-	-
	새터소하천 합류점 (No.3+250)	10.38	50	146	147	-	-
	두기소하천 합류점 (No.3+800)	9.71	50	142	142	-	-
	두리골소하천 합류점 (No.4+600)	7.69	50	120	120	-	-
	상월천 시점 (No.5+632)	6.31	50	108	108	-	-

6. 하천의 주요지점별 기본홍수량·계획홍수량·계획홍수위 및 계획하폭에 관한 사항

하천명	측점 (No.)	누가 거리 (m)	계 획 홍수량 (m ³ /s)	계 획 홍수위 (EL.m)	계획 규모 (년)	하폭 (m)		시설제방고 (EL.m)		비고
						현재	계획	좌안	우안	
상월천	0+000	0	170	219.63	50	30	30	221.95	221.95	상월천 종점
	1+589	200	170	234.15	50	34	34	236.56	236.56	방현2교 지점
	3+250	840	147	250.67	50	21	21	251.32	250.35	새터소하천 합류점
	3+800	1,825	142	256.59	50	22	22	257.47	257.43	두기소하천 합류점
	4+600	2,360	120	267.38	50	23	23	산	267.42	두리골소하천 합류점
	5+632	2,800	108	281.10	50	7	7	281.01	281.10	상월천 시점

7. 하천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복원지구 또는 친수지구에 관한 사항

하천명	구간(No.)	좌·우안 구분	지구구분	연장(m)	면적(m ²)
상월천	0+000~5+250	좌안	복원지구	4.590	101,963
	5+250~5+632	좌안	일반보전지구	1.042	14,291
	0+000~5+250	우안	복원지구	5.250	103,671
	5+250~5+632	우안	일반보전지구	0.382	4,263

8.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하천기본계획에 대한 도서 및 관계 서류는 전북특별자치도 물통합관리과, 임실군청 안전관리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43호

상월천 하천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하천법」 제10조에 의하여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전북특별자치도청(물통합관리과), 임실군청(안전관리과)에 비치된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4년 2월 13일

1. 하천의 명칭 및 종류 : 상월천 지방하천
2. 하천구역 지정(변경)일 : 2024. 2. 13.
3. 지정(변경) 사유 :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에 따른 하천구역 변경
4. 하천 구간

하천명	하 천 구 간			면적 (㎡)	결정 사유
	기 점	종 점	거리 (km)		
상월천	9개 지구 (좌안 - 8개 지구, 우안 - 1개 지구)		11.26	224,188	
	전북 임실군 관촌면 방현리 산29-3번지선 (No.0+120)	전북 임실군 관촌면 방현리 442-75번지선 (No.0+000)	0.12	752	기본계획 재수립
	전북 임실군 관촌면 방현리 442-77번지선 (No.0+350)	전북 임실군 관촌면 방현리 산29-3번지선 (No.0+120)	0.23	1,039	기본계획 재수립
	전북 임실군 관촌면 방현리 산27-1번지선 (No.0+480)	전북 임실군 관촌면 방현리 442-77번지선 (No.0+350)	0.13	744	기본계획 재수립
	전북 임실군 관촌면 신전리 산50-2번지선 (No.2+641)	전북 임실군 관촌면 방현리 산27-1번지선 (No.0+480)	2.16	34,903	기본계획 재수립
	전북 임실군 관촌면 신전리 621번지선 (No.2+950)	전북 임실군 관촌면 신전리 산50-2번지선 (No.2+641)	0.31	3,650	기본계획 재수립
	전북 임실군 관촌면 신전리 10-7번지선 (No.4+587)	전북 임실군 관촌면 신전리 621번지선 (No.2+950)	1.64	20,051	기본계획 재수립
	전북 임실군 관촌면 신전리 산25-10번지선 (No.4+827)	전북 임실군 관촌면 신전리 10-7번지선 (No.4+587)	0.24	4,018	기본계획 재수립
	전북 임실군 관촌면 신전리 149-3번지선 (No.5+632)	전북 임실군 관촌면 신전리 산25-10번지선 (No.4+827)	0.81	8,216	기본계획 재수립
	좌안부 소계			5.63	73,373

하천명	하 천 구 간			면적 (㎡)	결정 사유
	기 점	중 점	거리 (km)		
상월천	전북 임실군 관촌면 신전리 153-2번지선 (No.5+632)	전북 임실군 관촌면 방현리 442-76번지선 (No.0+000)	5.63	150,815	기본계획 재수립
	우안부 소계		5.63	150,815	1개 지구

- 첨부 열람서류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기재한 서류
2. 하천구역의 지형도면(축적 5,0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44호

영은천 하천기본계획(변경) 고시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수립한 「영은천 하천기본계획(변경)」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4년 2월 13일

1. 수립목적

그 간의 하천개수사업, 도시화, 기상 변화,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변화되는 하도 및 수리·수문 특성을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자원 종합지침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2. 금회수립 대상범위

수계명	하천명	하천 등급	하 천 의 구 간		연장 (km)	비고
			기 점	종 점		
금강 서해권	영은천	지방	전북 부안군 하서면 석상리 771번지선	전북 부안군 하서면 언독리 주상천(지방) 합류점	5.00	전북260호 (1982.10.11.)
			전북 부안군 하서면 석상리 815-3번지선	전북 부안군 하서면 언독리 주상천(지방) 합류점	5.92	전라북도 고시 제2001-279호 (2001.10.05.)
			전북 부안군 상서면 통정리 686번지선	전북 부안군 하서면 언독리 1079-1번지선 주상천(지방) 합류점	5.92	재수립

3. 연평균 강우량과 하천 수자원의 부존량에 관한 사항

하천명	유역 면적 (km ²)	수자원 총량 (백만m ³)	기 준 갈수량 (m ³ /s)	저수량 (m ³ /s)	유출량(백만m ³)			손실량 (백만m ³)
					홍수기	평상시	계	
영은천	17.23	21.44	0.0028	0.052	8.25	3.67	11.92	9.52

4. 정비계획

하천명	하천연장 (km)	하천기본계획(km)		하천정비(km)				비 고
		수립	미수립	합계	완료 구간	필요 구간	기타안전도 확보구간	
영은천	5.92	5.92	-	11.84	4.34	7.50	-	

주) 하천정비 연장은 금회 하천기본계획 수립 양안 연장임

5. 하천유역의 지역별 및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배분계획

하천명	주요지점명	유역 면적 (km ²)	계획 규모 (년)	기 본 홍수량 (m ³ /s)	계획홍수량 (m ³ /s)		유역 및 홍수방어 시설별 홍수량 (m ³ /s)
					하도분담	유역분담	
영은천	영은천 종점 (No.0+000)	17.23	50	251	251	-	-
	석불천 합류전 (No.1+250)	9.56	50	150	150	-	-
	안독제수문 지점 (No.1+300)	8.67	50	138	138	-	-
	청일교 지점 (No.2+989)	7.69	50	138	138	-	-
	도화천(소) 합류전 (No.3+600)	6.22	50	116	116	-	-
	풍랑천(소) 합류전 (No.4+600)	4.46	50	90	90	-	-
	용운천(소) 합류전 (No.5+850)	2.46	50	57	57	-	-
	영은천 시점 (No.5+915)	2.46	50	57	57	-	-

6. 하천의 주요지점별 기본홍수량·계획홍수량·계획홍수위 및 계획하폭에 관한 사항

하천명	측점 (No.)	누가 거리 (m)	계 획 홍수량 (m ³ /s)	계 획 홍수위 (EL.m)	계획 규모 (년)	하폭 (m)		시설제방고 (EL.m)		비 고
						현재	계획	좌안	우안	
영은천	0+000	0	251	5.34	50	38	46	4.41	5.63	영은천 종점
	1+250	1,250	150	5.72	50	32	40	4.32	4.72	석불천합류전
	1+300	1,300	138	5.76	50	26	34	5.15	4.98	안독제수문
	2+989	2,989	138	7.00	50	23	28	8.20	8.20	청일교
	3+600	3,600	116	11.27	50	20	-	11.97	13.07	도화천(소)합류전
	4+600	4,600	90	20.04	50	14	15	20.77	20.91	풍랑천(소)합류전
	5+850	5,850	57	35.28	50	16	-	35.81	36.79	용운천(소)합류전
	5+915	5,915	57	36.71	50	5	10	37.03	37.03	영은천 시점

7. 하천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복원지구 또는 친수지구에 관한 사항

하천명	구간(No.)	좌·우안 구분	지구구분	연장(m)	면적(m ²)
영은천	0+000~2+989	좌안	복원지구	2,989	123,538
	2+989~3+935	좌안	복원지구	946	24,375
	3+935~4+075	좌안	근린친수지구	140	3,430
	4+075~5+915	좌안	복원지구	1,840	36,564
	0+000~2+989	우안	복원지구	2,989	61,037
	2+989~5+915	우안	복원지구	2,926	26,658

8. 하천기본계획의 열람에 관한 사항

하천기본계획에 대한 도서 및 관계 서류는 전북특별자치도 물통합관리과, 부안군청 상하수도사업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45호

영은천 하천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하천법」 제10조에 의하여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전북특별자치도청(물통합관리과), 부안군청(상하수도사업소)에 비치된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4년 2월 13일

1. 하천의 명칭 및 종류 : 영은천 지방하천
2. 하천구역 지정(변경)일 : 2024. 2. 13.
3. 지정(변경) 사유 :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에 따른 하천구역 변경
4. 하천 구간

하천명	하 천 구 간			면적 (㎡)	결정 사유
	기 점	종 점	거리 (km)		
영은천	8개 지구 (좌안 - 4개 지구, 우안 - 4개 지구)		11.83	275,602	
	전북 부안군 하서면 언독리 328-27번지선 (No.1+289)	전북 부안군 하서면 언독리 690-1번지선 (No.0+000)	1.284	64,915	기본계획 재수립
	전북 부안군 하서면 석상리 906-1번지선 (No.2+989)	전북 부안군 하서면 언독리 328-27번지선 (No.1+289)	1.705	58,935	기본계획 재수립
	전북 부안군 하서면 석상리 871번지선 (No.4+737)	전북 부안군 하서면 석상리 906-1번지선 (No.2+989)	1.748	42,268	기본계획 재수립
	전북 부안군 하서면 석상리 881-2번지선 (No.5+915)	전북 부안군 하서면 석상리 871번지선 (No.4+737)	1.178	21,789	기본계획 재수립
	좌안부 소계		5.915	187,907	4개 지구
	전북 부안군 하서면 언독리 994번지선 (No.1+289)	전북 부안군 하서면 언독리 1079-1번지선 (No.0+000)	1.284	25,346	기본계획 재수립
	전북 부안군 하서면 석상리 229-15번지선 (No.2+989)	전북 부안군 하서면 언독리 994번지선 (No.1+289)	1.705	35,680	기본계획 재수립
	전북 부안군 하서면 석상리 765-4번지선 (No.4+737)	전북 부안군 하서면 석상리 229-15번지선 (No.2+989)	1.748	18,599	기본계획 재수립
	전북 부안군 상서면 통정리 686번지선 (No.5+915)	전북 부안군 하서면 석상리 765-4번지선 (No.4+737)	1.178	8,070	기본계획 재수립
	우안부 소계		5.915	87,695	4개 지구

첨부 열람서류 : 1.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기재한 서류

2. 하천구역의 지형도면(축적 5,0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94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전북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제8조(공고)에 의거 등록 및 폐기한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4년 2월 13일

공인의 등록 및 폐기

- 1. 공인 등록·폐기 사유 : 조직개편에 따른 공인 정비
- 2. 공인 등록·폐기일 : 2024년 2월 13일
- 3. 등록·폐기 공인명 및 인영

등록 공인		
공인명		인영
군산소방서	군산소방서대응예방과일상경비출납원인	
폐기 공인		
공인명		인영
군산소방서	군산소방서방호구조과일상경비출납원인	
〃	군산소방서 화학119구조대장인	

폐 기 공 인		
ㄴ	군산소방서화학119구조대일상경비출납원인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200호

비영리민간단체 명칭, 대표자 변경 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명칭, 대표자 변경)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4년 2월 13일

■ 공 고 사 항

- ① 등록번호 : 제 2018-1-전라북도-10호
- ② 단체명칭 : 사단법인 한국농촌지도자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
- ③ 대 표 자 : 권오선
- ④ 소 재 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안터6길 36
- ⑤ 주된사업
 - 과학영농과 농업·농촌문화계승 및 생활향상을 위한 선도시범활동
 - 농업·농촌·식품 다원적 기능유지 발전을 위한 사업
 - 농업기술연찬 및 농업인 교육, 지식, 기술, 경영정보화 사업
 - 농촌 청소년 및 농업인후계자 육성지도
 - 농업인 신문 및 농업관련 도서, 홍보물 보급
 - 회원 상호간 정보교환 및 친목도모
 - 품목별 연구회 조직(위원회) 구성 운영
- ⑥ 변경사항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변경 전	변경 후	
단체명칭	사단법인 한국농촌지도자전라북도연합회	사단법인 한국농촌지도자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	
대표자	최 규 엽	권 오 선	

※ 기타 문의사항은 농촌지원과 인력육성팀 정우성(290-6171)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203호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공고

「민법」 제4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정관 변경을 허가 하였음을 공고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4년 2월 13일

■ 공 고 사 항

- ① 등록번호 : 제 2018-1-전라북도-10호
- ② 단체명칭 : 사단법인 한국농촌지도자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
- ③ 대 표 자 : 권오선
- ④ 소 재 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안터6길 36
- ⑤ 변경허가사항

현 행(구)	개 정(신)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농촌지도자전라북도연합회(이하 본회)라 한다. 약칭은 전북농지연이라 칭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농촌지도자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이하 본회)라 한다. 약칭은 전북특자도농지연이라 칭한다.
제2조(위치) 본회의 사무소는 전북 전주시 완산구 안터6길 36 전라북도농업인회관 내에 둔다.	제2조(위치) 본회의 사무소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안터6길 36 전북특별자치도농업인회관 내에 둔다.
제24장 회원 제5조(회원) 2. 정회원은 본 회 목적에 찬동하고 읍,면,동의 농촌지도자회에 가입한 자로 한다.	제24장 회원 제5조(회원) 2. 정회원은 본 회 목적에 동의하고 읍,면,동의 농촌지도자회에 가입한 자로 한다.
제6조(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선거권 및 대의원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의 의결권을 가지며, 명예회원은 총회에서 발언권을 가질 수 있다.	제6조(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선거권 및 대의원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7조(회원자격 상실) 1. 마. 회원 연령제한만 75세 이상은 준회원으로 한다.	전체 삭제
제3장 자산 및 회계 제9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비, 출연금, 찬조금, 보조금, 자체 사업 수익금, 타 기관 단체에 출자된 당회의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제3장 자산 및 회계 제9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비, 출연금, 찬조금, 보조금, 자체 사업 수익금, 타 기관 단체에 출자된 당회의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현 행(구)	개 정(신)
당금, 배당 물품등 과실, 기타 자산 등으로 충당한다.	배당금, 배당 물품등 과, 실 , 기타 자산 등으로 충당한다.
제11조(자산의 구성) 2.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제11조(자산의 구성) 2.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 실
제12조(자산의 종류) 3. 가. 기본재산 중 부동산 등의 임대보증금 보관금의 과실	제12조(자산의 종류) 3. 가. 기본재산 중 부동산 등의 임대보증금 보관금의 과, 실
제20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로 끝낸다.	제20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로 한다.
제4장 조직 및 기구 제21조(임원) 2. 부회장: 4명(여성부회장 1인 포함)	제4장 조직 및 기구 제21조(임원) 2. 부회장: 부회장: 5명(여성부회장 1인 포함, 단 법령에 의한 여성회원 500명 이상일 경우 들 수 있다.
제22조(임원선출): 1. 본 회의 정·부회장, 감사는 피선거권이 있는 회원 중에서 대의원 총회의결에 의하여 선출하되 도회장단(회장, 부회장)과 각 시군 연합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되고 부회장, 감사는 시·군회장과 겸직할 수 없다.	제22조(임원선출): 1. 본 회의 회장, 부회장, 여성부회장, 감사 는 피선거권이 있는 회원 중에서 대의원 총회의결에 의하여 선출하되 도회장단(회장, 부회장)과 각 시군 연합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되고 부회장, 감사는 시·군회장과 겸직할 수 없다.
2. 정·부회장, 감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등록일 현재 다음과 같은 자격으로 갖추어야 한다.	2. 회장, 부회장, 감사 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등록일 현재 다음과 같은 자격으로 갖추어야 한다.
2. 다. 농업 관련 법령으로 규정하는 규모의 농지는 5배, 축산은 10배 이상 또는 동등 이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농업인	2. 다. 농업 관련 법령으로 규정하는 규모의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농업인
제23조(임원의 의무) 1. 회장은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본회를 대표한다.	제23조(임원의 의무) 1. 회장은 본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본회를 대표한다.
3. 사업부회장은 본회의 사업 활성화 및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정책부회장은 교육사업 및 정책개발, 여성부회장은 여성회원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3. 사업부회장은 본회의 사업 활성화 및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정책부회장은 교육사업 및 정책개발, 대외협력부회장은 대외협력 업무, 여성부회장은 여성회원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제7장 보칙 (경과조치) 이 정관의 개정 전 사항은 이 정관에 의하여 개정된 것으로 보며 단, 임원에 관한 사항은 2021년 임원 개선 시부터 적용한다.	제7장 보칙 (경과조치) 이 정관의 개정 전 사항은 이 정관에 의하여 개정된 것으로 보며 단, 임원에 관한 사항은 최중이사회 결의 받은 날로부터 적용한다.
(사)한국농촌지도자전라북도연합회사무운영 규정 제2장 사무처 운영 규정 제3조(임용권) 2. 사무처장의 임기는 선출된 회장과 3년으로 하고, 임기종료 후 새로 선출된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사회회의 승인을 얻어 재임용할 수 있다.	(사)한국농촌지도자전북특별자치도연합회 사무운영규정 제2장 사무처 운영 규정 제3조(임용권) 2. 사무처장의 임기는 선출된 회장의 임기내로 하고, 임기종료 후 새로 선출된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 사회의 승인을 얻어 재임용할 수 있다.
제4조(채용기준 및 정년) 3. 정년은 사무처장만 65세, 사무원은 만 60세로 한다.	제4조(채용기준 및 정년) 3. 정년은 사무처장 70세, 사무원은 65세 로 한다.
제6조(임용된 자의 제출서류) 2. 자필 이력서(학력 및 1월 이상 경력 기재, 사진 첨부) 1통	제6조(임용된 자의 제출서류) 2. 이력서(사진 첨부) 1통
4. 경력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전체 삭제
5. 졸업증명서 1통(해당자에 한함)	전체 삭제

현 행(구)	개 정(신)
제3장 회비 및 납부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정관 제7조에 의거 도연합회의 재정을 충당하고, 중앙회비 납부를 위하여 회비징수제도를 규정함에 있다.	제3장 회비 및 납부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정관 제9조에 의거 도연합회의 재정을 충당하고, 중앙회비 납부를 위하여 회비징수제도를 규정함에 있다.
제5장 문서 규정 제5조(문서의 접수) 2. 전신전화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는 기재 없이 문서주관 담당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문서의 접수는 당해 문서의 첫 장 또는 다음 장의 여백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문서접수인을 찍어 처리한다. 다만, 경유기관이 접수한 문서는 문서처리인을 찍지 아니하고 접수번호와 접수 일자만을 기재하여 처리한다.	제5장 문서 규정 제5조(문서의 접수) 2. 전신전화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는 기재 없이 문서주관 담당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문서의 접수는 당해 문서의 첫 장 또는 다음 장의 여백에 문서 접수인을 찍어 처리한다. 다만, 경유기관이 접수한 문서는 문서처리인을 찍지 아니하고 접수번호와 접수 일자만을 기재하여 처리한다.
제6장 임원선거관리규정 제2절 임원선거 제6조(선거관리위원회 설치) 4. 정·부회장 및 감사 후보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장 임원선거관리규정 제2절 임원선거 제6조(선거관리위원회 설치) 4. 회장·부회장 및 감사 후보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8. 선거관리위원은 사임 후 정·부회장 및 감사 후보로 등록할 수 없다.	8. 선거관리위원은 사임 후 회장·부회장 및 감사 후보로 등록할 수 없다.
제10조(후보자 등록신청 및 등록금) 4. 정·부회장, 감사 후보자의 정책을 포함한 직무수행 공약사항	제10조(후보자 등록신청 및 등록금) 4. 회장·부회장 , 감사 후보자의 정책을 포함한 직무수행 공약사항
제21조(당선인 결정) 1. 도회장은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1, 2위 결선 투표로 결정한다. 단 동수일 때는 연장자순으로 한다.	제21조(당선인 결정) 1. 도회장은 1차 본 투표에서 다득표순으로 결정한다. 단 동수일 때는 연장자순으로 한다.
3. 부회장, 감사는 다득표순으로 한다. 다만 동수일 때는 연장자순으로 한다. 득표순에 따라 수석부회장, 사업부회장, 정책부회장으로 한다.	3. 부회장, 감사는 다득표순으로 한다. 다만 동수일 때는 연장자순으로 한다. 득표순에 따라 수석부회장, 사업부회장, 정책부회장, 대의협력부회장으로 한다.
제25조(실비지급)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금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실비지급)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금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실비금액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27장(여성부회장 선출방법) 3. 가. 10년(5년) 이상의 본회 회원 경력	제27장(여성부회장 선출방법) 3. 가. 5년 이상의 본회 회원 경력
나. 시·군 연합회 부회장이거나 이었던 자	나. 시·군 연합회 부회장이었던 자
다. 농업 관련 법령으로 규정하는 규모의 농지는 5배, 축산은 10배 이상 또는 동등 이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농업인으로 부부가 농업에 종사하는 자는 인정한다.	다. 농업 관련 법령으로 규정하는 규모의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농업인.
부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시군연합회장 회의(총회) 결의를 얻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총회 의결 득한 날 로부터 시행한다.

※ 기타 문의사항은 농촌지원과 인력육성팀 정우성(290-6171)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218호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공고

민법 제4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법인의 정관변경을 허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4년 2월 13일

■ 공 고 사 항

- 1. 허가번호 : 제2015-71호
- 2. 법 인 명 : 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 3. 소 재 지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72, 4층
- 4. 대 표 자 : 김 관 영
- 5. 설립목적 : 전북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창작역량 강화와 향유 기회 확대를 추진하고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개발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함
- 6. 변경 허가사항

현 행(구)	개 정(신)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재단은 전라북도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창작역량 강화와 향유기회 확대를 추진하고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개발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목적) 재단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창작역량 강화와 향유기회 확대를 추진하고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개발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재단의 사무소는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 둔다.	제3조(소재지) 재단의 사무소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 둔다.

<p>제7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u>전라북도지사</u>(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된다.</p>	<p>제7조(이사장) ① 이사장은 <u>전북특별자치도지사</u>(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된다.</p>
<p>제37조(재단해산) ① (생략) ② 재단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 의결과 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u>전라북도</u>에 귀속한다.</p>	<p>제37조(재단해산) ① (생략) ② 재단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 의결과 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u>전북특별자치도</u>에 귀속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소관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의 시행 이전에 행해진 사항은 본 정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정관에 따라 재단의 제규정(내규포함)의 명칭을 아래 각 호에 따라 일괄 개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단 제규정의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을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으로 개정한다. 2. 재단 제규정의 "전북문화관광재단"을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으로 개정한다. 3. 재단 제규정의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개정한다. 4. 재단 제규정의 "전라북도지사"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 개정한다. 5. 재단 제규정의 "전북예술회관"을 "전북특별자치도예술회관"으로 개정한다.

7. 변경 허가일자 : 2024. 2. 5.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219호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조합 지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휴면조합으로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4년 2월 13일

1. 휴면조합 지정내역

조합명	소재지	대표자	설립일자	휴면지정 사유
전북서남레미콘사업협동조합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6 전북은행빌딩 1302호	공 석	2008.2.22.	- 고유목적사업 1년 이상 미수행 - 협동조합 정기총회 2년 이상 연속미개최

2. 유의사항

- 가. 위 조합은 공고 후 1년 이내에 활동재개 신청이 없거나, 활동재개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활동재개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별도의 청문절차 없이 해산됩니다.
- 나. 휴면으로 지정된 조합.단체는 중앙회에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 다. 휴면으로 지정된 조합이 활동재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활동재개 신고서를 작성하여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주무관청(전북특별자치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활동재개를 하였거나 활동재개를 할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지정을 해제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기업애로해소지원단 현장지원팀 정종훈(280-4731)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220호

중소기업협동조합 휴면조합 지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휴면조합으로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4년 2월 13일

1. 휴면조합 지정내역

조합명	소재지	대표자	설립일자	휴면지정 사유
남원목기사업 협동조합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목공예길 26	공 석	2010.8.27.	- 고유목적사업 1년 이상 미수행 - 협동조합 정기총회 2년 이상 연속미개최

2. 유의사항

가. 위 조합은 공고 후 1년 이내에 활동재개 신청이 없거나, 활동재개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활동재개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별도의 청문절차 없이 해산됩니다.**

나. 휴면으로 지정된 조합.단체는 중앙회에서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다. 휴면으로 지정된 조합이 활동재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활동재개 신고서를 작성하여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주무관청(전북특별자치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활동재개를 하였거나 활동재개를 할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지정을 해제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기업애로해소지원단 현장지원팀 정종훈(280-4731)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232호

전북특별자치도 도립공원 공원계획변경(안) 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전북특별자치도 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4조의3 및 제1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고자 주민 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함을 알려드립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4년 2월 13일

■ 공 고 사 항

- ① 등록번호 : 제2024-232호
- ② 개최목적 : 도립공원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른 공원계획 변경(안) 주민 공람·공고 및 주민의견 수렴
- ③ 공원계획 개요
 - 계획명 : 전북특별자치도 도립공원 공원계획변경(안)
 - 위치 및 면적 : 전북특별자치도 4개 도립공원 139.375km²
 - 계획수립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공원계획변경(안)

면적:km²

구분	모악산			대둔산			마이산			선운산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계	43.309	43.301	감0.008	35.163	35.163	-	17.220	17.141	증0.079	43.683	43.386	감0.297
자연보존지구	0.094	0.094	-	7.741	7.741	-	2.771	2.771	-	8.717	8.717	-
자연환경지구	40.280	40.068	감0.212	23.510	23.452	감0.058	14.157	14.075	증0.082	31.314	31.485	감0.171
공원마을지구 (구, 집단시설지구)	2.613 (2.208)	2.745 (2.208)	증0.132 (2.208)	3.718 (0.167)	3.776 (0.167)	증0.058 (0.167)	0.279 (0.134)	0.282 (0.134)	증0.003	2.827 (0.285)	2.359 (0.284)	감0.468 (감0.001)
공원문화유산지구	0.322	0.394	증0.072	0.194	0.194	-	0.013	0.013	-	0.825	0.825	-

※ 관련도서 게재생략 : 공람장소에 비치

④ 주민설명회 개최

- 내용 : 도립공원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른 공원계획 변경(안) 설명
- 공원구역(편입 및 해제), 용도지구 조정, 공원시설 등
- 주민설명회 일시 및 장소

구 분	일 시	장 소	비고
모악산(전주시)	2월 19일(월) 10시	삼천3동 주민센터 2층 (전주시 완산구 삼천천변2길 37)	
모악산(김제시)	2월 19일(월) 14시	금산문화복지센터 1층 (김제시 금산면 원평8길 37)	
모악산(완주군)	2월 20일(화) 10시	구이면 행정복지센터 3층(대회의실) (완주군 구이면 구이로 1482)	
대둔산(완주군)	2월 20일(화) 15시	운주면 행정복지센터 2층(다목적회의실) (완주군 운주면 장선로 124)	
마이산(진안군)	2월 21일(수) 10시	산약초타운 2층(홍삼실) (진안군 진안읍 단양리 740)	
선운산(고창군)	2월 21일(수) 15시	선운산유스호스텔 1층(대강당)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로 158-36)	

⑤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24. 02. 08. ~ 2024. 02. 29.
- 공람내용 : 공원계획변경(안) 도면 및 공원계획변경(안) 조서
- 공람 장소

구 분	장 소	연락처	비고
모악산(전주시)	전주시 완산구청 공원녹지과 공원관리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232)	063-220-5175	
모악산(김제시)	김제시 공원녹지과 모악산관리팀 (김제시 중앙로 40 신관 4층 공원관리과)	063-540-4196	
모악산(완주군)	완주군 관광체육과 모악산공원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관광체육과)	063-290-2752	
대둔산(완주군)	완주군 관광체육과 대둔산공원 (완주군 용진읍 지암로 61)	063-290-2742	
마이산(진안군)	진안군 관광과 마이산 관리팀 (진안군 진안읍 마이산로 130 관광정보센터 2층)	063-430-8753	
선운산(고창군)	고창군 산림공원과 선운산공원팀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제청사1층 산림공원과)	063-560-8684	

⑥ 의견제출 방법

- 제출기간 : 2024. 02. 08. ~ 2024. 02. 29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 제출서(도 및 시·군 홈페이지에서도
출력 가능)에 따라 해당 사·군 공원관리담당에 서면 제출

※ 기타 문의사항은 기후환경정책과(280-4173) 및 해당 시·군 공원관리담당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지시사항

◇ 2024. 2. 1.(목) 09:00 간부회의 시

관리번호	지시 제목	지시 내용
2024-8	특별자치도 출범 찾아가는 도민보고회 후속조치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5일 전주·완주를 시작으로 도내 7개 권역별로 '특별자치도 출범 찾아가는 도민보고회'를 진행하고 있음 ○ 현장에서 도민들이 제안한 내용이 도정과 특례 발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기 바라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참여하지 못한 도민들을 위해 보고회 영상(shorts 등 활용)을 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기 바람 <p>(주관: 자치제도과/협조: 총괄지원과, 특례정책과, 소통기획과)</p>
2024-9	'디지털 크리에이터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크리에이터산업 통계에 따르면, 30대 이하 중사자가 65%에 달하는 등 청년세대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파악됨 ○ 우리도에서 디지털 크리에이터 분야를 도내 청년창업 활성화 등 산업적 측면에서 선점할 수 있도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1.10.)한 '디지털 크리에이터 미디어산업 실태조사'를 면밀히 분석하고, 콘텐츠융합진흥원과 연계해 디지털 크리에이터 분야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p>(주관: 문화산업과/협조: 전북특별자치도콘텐츠융합진흥원)</p>
2024-10	양식수산물 육성 정부지원을 활용한 우리도 수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p>《 (1.25./해양수산부)양식수산물 핵심 품목 전주기 육성방안 수립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 김 국제표준 규격 발전, 해외 김 홍보관 설치, 김 육상 상용화 ○ (굴) 개체 굴 양식 확대, 수출 다변화(알굴 가공 수출 등) 품 개발 ○ (전복) 가공 레시피 개발 보급, 일본 편중 수출 개선, 3단순화 ○ (넙치) 가공시장 1,000억원 규모 확대, 1인용 유통 개편, 우수종 장비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수산부에서 김·굴·전복·넙치 4대 수산물을 대표 양식 수산물로 육성하기 위해 '양식수산물 핵심 품목 전주기 육성방안'을 발표함 ○ 도내 기업, 스타트업, 농수산대학 등과 연계해 4대 수산물 분야에서 우리도 수산업의 생산·유통·소비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p>(주관: 수산정책과/협조: 기업유치지원실, 교육협력추진단)</p>

관리 번호	지시 제목	지시 내용
2024-1 1	1인 가구 돌봄 강화대책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가구 비중이 전국 평균 41.5%를 넘었으며, 우리도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45%가 1인 가구임 ○ 1인 가구가 증가할수록 건강^①, 재난대처^②, 경제적 어려움^③, 사회적 고립^④, 부동산 시장변화^⑤, 복지^⑥ 등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부처별 1인 가구 대책을 조사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발굴하여 로드맵을 수립하는 등 1인 가구 돌봄 강화대책 마련하기 바람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정책기획관/협조: 전실국)</p>
2024-1 2	관광관련 공모사업 선정내역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 공모사업을 적극 대응해 주시기 바라며 ○ 또한, 최근 5년간 관광 관련 공모사업에 대해 연도별 선정 결과, 공모 내용, 확보 예산 등을 정리하여 보고하기 바람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관광산업과)</p>
	당면·현안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사업 관리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기부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 사업에 우리도가 ‘특수목적용 지능형 기계부품 산업’ 분야로 지정되었음 - 최대한 많은 도내 기업들이 제도를 활용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예산집행, 절차이행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하기 바람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주력산업과/협조: 기업유치지원실)</p> ○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 및 상반기 신속집행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금리·고물가 등 어려운 지역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도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67.2%)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특히, 지역소멸대응기금 집행에 관해 여러 차례* 강조했으므로, 매월 집행률을 점검하고, 우수 시군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람 <p>* 간부회의 지시 : '23.11.9. / '24.1.5.</p> <p style="text-align: right;">(주관: 청년정책과/협조: 전실국)</p>

관리 번호	지시 제목	지시 내용
		<p>○ 도내 기업 대상 세계한인비즈니스 대회 참여 확대</p> <p>- 도내 기업들이 내년 세계한인비즈니스 대회 시 우리도 생산품 외에 도 기업 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품목들을 전시할 수 있도록 하여 전 세계 한인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바람 (주관: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사무국)</p> <hr/> <p>○ 설명절 공직기강 확립 및 공직선거법 준수 철저</p> <p>- 청원들은 설명절을 맞아 금품수수 등 관행적인 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 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하고, - 또한, 총선을 앞두고 실국장을 비롯한 전직원이 선거법 내용을 숙지하도록 하여 정치적 중립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주관: 전 실국)</p> <hr/> <p>○ 설명절 민생안정 종합대책 속도감 있게 추진</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style="text-align: center;">《 (1.30.)설명절 민생안정 종합대책 발표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대분야) 지역경제, 민생지원, 편의지원, 안전대응 ○ (주요대책) 시군 지역 물가책임관 실·국장급 상향 / 지방공공원칙 /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 소외계층 온기나눔 확산 / 집중지도 / 교통수요 능동대처 / 포트홀 등 교통안전 위험 사전제응급의료기관 지정 운영 </div> <p>- 1.30일에 발표한 '설명절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통해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발표에 그치지 않고 속도감 있게 실행하기 바람 (주관: 전 실국)</p>

군산시 공고 제2024-296호

군산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14호선 외3개소)사업 공사완료 공고

군산시 고시 제2021-53호(2021.4.16.)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시행 중인 군산시 지곡동 606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14호선 외 3개소)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3일

군 산 시 장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지곡동 606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공공공지)사업
 - 나. 명 칭 : 지곡동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조성사업
(중로1-14호선 외 2개노선 및 39호 공공공지)

3. 사업의 규모 및 면적

노선명	시설결정			금회 실시계획			비 고
	연 장	폭 원	최초결정일	연 장	폭 원	면 적	
중로1-14	1,030m	20~24m	전북고177 (’92.9.7.) / 건고2 (’72.2.16.)	70m	4m	235㎡	
중로2-188	47m	15m		47m	15m	754㎡	
소로1-475	30m	10m		30m	10m	285㎡	

시설명	시설결정	금회 실시계획	비 고
	면 적	면 적	
39호 공공공지	599㎡	599㎡	

-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가. 사업시행자 주소 : 전북 익산시 동서로63길 4, 606호(어양동, 하모니시티)
 - 나. 사업시행자 성명 : (주)은성종합개발 대표 유병성
-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21. 4. 16. ~ 2024. 6. 30.(준공 2024. 1. 24.)
-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조서 : 실음생략
- 7. 관계도서 : 실음생략

김제시 고시 제2024-19호

김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지평선 복합어울림 창업지원센터)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김제 도시계획시설사업인 지평선 복합어울림 창업지원센터 신축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김제시청 도시과(063-540-391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김 제 시 장
2024년 2월 13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

가. 위 치 : 김제시 요촌동 190-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공공청사)

나. 명 칭 : 지평선 복합어울림 창업지원센터 신축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가. 면 적 : 680㎡

나. 규 모

구분	층수	건축면적(㎡)	연면적(㎡)	비고
지평선 복합어울림 창업지원센터	지상4층	358.64	1,400	건폐율 52.74% 용적률 205.88%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김제시장 (공영개발과)

나. 주 소 : 김제시 중앙로 40 (서암동)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가.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나. 준공예정일 : 2024년 12월 31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붙임

7. 관계도서 : 게재생략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합 계					680					
1	김제시 요촌동	190-2	대	51	51	박*희	김제시 요촌동 ***- **아파트 *동 ***호	김제 ** 새마을 금고	전라북도 김제시 요촌동 ***-*	근저 당권
2	김제시 요촌동	190-4	대	629	629	김제시				

수용 또는 사용할 지장물조서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장물 명	구조 및 규격	수량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김제시 요촌동	190-2	대	점포 (1~3층)	시멘트 벽돌조 판넬 지붕	109.5㎡	박*희	김제시 요촌동 ***- **아파트 *동 ***호	김제 ** 새마을 금고	전라북도 김제시 요촌동 ***-*	근저 당권

완주군 고시 제2024-16호

완주 군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화산배수지)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완주 군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화산배수지)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완주군청 건설도시과(☎063-290-284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완 주 군 수
2024년 2월 13일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완주군 화산면 화월리 산50-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완주 군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화산배수지)사업
 - 나. 명 칭 : 화산면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A=2,475.0㎡, V=600㎥/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명 : 완주군수(상하수도사업소장)
 - 나.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봉동읍 삼봉로 920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가.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나. 준공예정일 : 2024.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구분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면적(㎡)	토지소유자		소유권외의권리			비고
	읍	리	지번				성명(지분)	주소	성명	주소	권리종류	
4필지					2,475	2,475.0						
1	화산	화월	산50-4	임	2,398	2,398	완주군					
2	화산	화월	산50-5	도	30	30	완주군					
3	화산	화월	260-2	전	7	7	완주군					
4	화산	화월	901-18	구	40	40	국(농림수산부)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 규정에 의함
8. 관계도서 : 게재생략

고창군 고시 제2024-24호

고창 군계획시설(청솔제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고창군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된 청솔제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13일

고 창 군 수

■ 고창 군계획시설(청솔제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고창군 고창읍 도산리 856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고창 군계획시설(청솔제공원)사업
 - 명 칭 : 고창 고인돌 생태공원 조성사업(1단계)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사업면적 : A=91,665m²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고창군수, 주 소 :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
 -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6. 1.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지장물)조서 : 따로 붙임
7.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 8 관계도서 : "계재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번지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소계				119,476	91,665						
1	고창읍 도산리	330-2	도로	53	37		고창군				
2	고창읍 도산리	330-4	대	83	83		고창군				
3	고창읍 도산리	331	전	1,293	1,293		고창군				
4	고창읍 도산리	331-3	전	1,110	1,063		고창군				
5	고창읍 도산리	331-4	전	884	884		고창군				
6	고창읍 도산리	331-5	전	778	778		고창군				
7	고창읍 도산리	331-6	전	790	790		고창군				
8	고창읍 도산리	331-7	전	935	935		고창군				
9	고창읍 도산리	331-8	전	496	496		고창군				
10	고창읍 도산리	331-9	전	136	13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연8길 16-12	전경범				
11	고창읍 도산리	331-10	전	508	508		고창군				
12	고창읍 도산리	331-14	전	23	23		고창군				
13	고창읍 도산리	332-1	전	1,620	1,620		고창군				
14	고창읍 도산리	332-2	도로	129	129		고창군				
15	고창읍 도산리	333-2	도로	152	42	고창군 고창읍 도산리 317	김재진				
16	고창읍 도산리	333-3	답	104	104		고창군				
17	고창읍 도산리	334	전	53	53		고창군				
18	고창읍 도산리	335	전	512	512		고창군				
19	고창읍 도산리	563	도로	129	19		고창군				
20	고창읍 도산리	568	전	1,446	1,446		고창군				

일련 번호	소재지	번지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m ²)	편입 면적(m ²)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21	고창읍 도산리	568-1	전	5,788	5,788		고창군				
22	고창읍 도산리	568-2	전	1,032	1,032		고창군				
23	고창읍 도산리	568-4	전	316	316		고창군				
24	고창읍 도산리	568-5	전	2,290	2,290		고창군				
25	고창읍 도산리	569-3	전	514	514		고창군				
26	고창읍 도산리	572	유지	12,651	9,822		농림축 산식품 부				
27	고창읍 도산리	576	답	1,162	390		전라북 도				
28	고창읍 도산리	576-1	답	22	22		고창군				
29	고창읍 도산리	577	도로	698	80		고창군				
30	고창읍 도산리	579-1	도로	1,203	1,000		고창군				
31	고창읍 도산리	580-9	도로	1,056	91		고창군				
32	고창읍 도산리	657	도로	2,598	1,540		건설교 통부				
33	고창읍 도산리	850	답	3,349	3,349		고창군				
34	고창읍 도산리	851	답	3,225	3,225		고창군				
35	고창읍 도산리	852	답	1,353	1,353		고창군				
36	고창읍 도산리	853	답	2,421	2,421		고창군				
37	고창읍 도산리	854	답	1,962	1,962		고창군				
38	고창읍 도산리	855	답	3,155	3,155		고창군				
39	고창읍 도산리	856	답	4,161	4,161		고창군				
40	고창읍 도산리	856-1	도로	23	23		고창군				

일련 번호	소재지	번지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41	고창읍 도산리	857	답	4,245	4,245		고창군				
42	고창읍 도산리	857-1	도로	31	31		고창군				
43	고창읍 도산리	857-2	도로	94	94		고창군				
44	고창읍 도산리	858	답	2,039	2,039		고창군				
45	고창읍 도산리	858-1	도로	136	136		고창군				
46	고창읍 도산리	859	답	2,561	2,561		고창군				
47	고창읍 도산리	859-1	도로	8	8		고창군				
48	고창읍 도산리	860	답	1,239	1,239		고창군				
49	고창읍 도산리	861	답	1,713	1,713		고창군				
50	고창읍 도산리	862	답	2,803	2,803		고창군				
51	고창읍 도산리	863	답	893	893		전라북 도				
52	고창읍 도산리	864	답	625	625		전라북 도				
53	고창읍 도산리	865-1	도로	524	100		고창군				
54	고창읍 도산리	866-1	도로	434	100		고창군				
55	고창읍 도산리	867-1	도로	883	220		고창군				
56	고창읍 도산리	868-1	도로	858	260		고창군				
57	고창읍 도산리	869-1	도로	1,163	330		고창군				
58	고창읍 도산리	891	도로	2,542	2,319		농림축 산식품 부				
59	고창읍 도산리	891-2	도로	214	20		농림축 산식품 부				

일련 번호	소재지	번지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m ²)	편입 면적(m ²)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60	고창읍 도산리	892	구거	2,046	1,947		농림축 산식품 부				
61	고창읍 도산리	893	구거	253	253		농림축 산식품 부				
62	고창읍 도산리	894	구거	628	628		농림축 산식품 부				
63	고창읍 도산리	895	구거	4,376	3,880		농림축 산식품 부				
64	고창읍 도산리	896	도로	8,842	770		농림축 산식품 부				
65	고창읍 도산리	898	구거	1,160	130		농림축 산식품 부				
66	고창읍 도산리	산1-3	도로	2,668	280		고창군				
67	고창읍 도산리	산3-8	도로	4,685	943		고창군				
68	고창읍 도산리	산33-7	임야	692	100		전라북 도				
69	고창읍 도산리	산33-9	임야	109	109		고창군				
70	고창읍 도산리	산33-11	임야	133	133		고창군				
71	고창읍 도산리	산34-1	묘지	5,644	5,644		고창군				
72	고창읍 도산리	산34-3	묘지	144	144		고창군				
73	고창읍 도산리	산35	임야	1,646	1,646	고창군 고창읍 고인돌공원길 102-5	김금희				
74	고창읍 도산리	산35-1	임야	602	352		고창군				
75	고창읍 도산리	산35-2	임야	56	56		고창군				
76	고창읍 도산리	산35-3	임야	193	193		고창군				

일련 번호	소재지	번지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상 면적(m ²)	편입 면적(m ²)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77	고창읍 도산리	산35-4	임야	130	130		고창군				
78	고창읍 도산리	산35-6	임야	314	314		고창군				
79	고창읍 도산리	산35-7	임야	147	147		고창군				
80	고창읍 도산리	산35-8	임야	252	25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연8길 16-12	전경범				
81	고창읍 도산리	산35-9	임야	293	293		고창군				
82	아산면 봉덕리	357-4	도로	1,245	100		건설교 통부				

■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의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번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물건소유자		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소계												
1	고창읍 도산리	산35	감나무		121주	고창군 고창읍 고인돌공원길 102-5	김금희					
			복숭아나무		6주							
			꾸지뽕		1주							
			뽕나무		4주							
			웃나무		4주							
			매실나무		14주							
			포도나무		1주							
			엄나무		3주							
			고욤나무		4주							
			석류나무		2주							
			두릅		20주							
더덕, 등글레 등		500주										